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3
----------	-----

2023. 4. 25.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4. 6.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

나. 상정의결

-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3. 4. 25.)  
“ 원안가결 ”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

-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중복된 내용 삭제하고,
- 나. 조례의 주요 대상을 조정·확대하여 사회적 고립·고독사 문제를 범사회적으로 고찰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공고히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나. 고독사 예방 지원 대상을 강남구 주민으로 확대(안 제1, 2, 5, 8조)

####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23년 본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3. 3. ~ 2023. 3. 23.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1. 조례안의 취지와 개요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정 계획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서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중복하여 담고 있는 사항들을 삭제·분리하고 현행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로 개정함과 동시에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독립된 조례로써 전부개정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음
- 최근 전통적 가족구조의 변화와 개인화 경향의 심화 등으로 가족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돌봄의 기능과 역할이 약화되면서 가족과 친척을 비롯한 지역 사회에서 단절된 상태로 혼자 생계를 영위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음에 이른 뒤에도, 오랫동안 그 시신이 방치되는 소위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고독사는 죽음과 연계되어 인식되기 때문에 노년기에 빚어지는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고독사의 실태는 50대와 60대, 40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고독사를 65세 이상의 노인 정책 차원에서 넘어서서 위기를 경험하는 사회적 집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sup>1)</sup>
-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2017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와 유사한 사망형태를 보이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처리현황 수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표-1> 무연고 사망자 현황

(기간 : 2012 ~ 2017년 상반기, 시도 취합)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상반기
계	1,021	1,275	1,384	1,669	1,833	970

\* 자료: 보건복지부

1) 나이토 카츠오, 서울시 고독사 실태와 대안, 서울시복지재단, 2016. 7, 2p.

〈표-2〉 연령별·성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12	'13	'14	'15	'16	'17.상반기	
총계		1,021	1,275	1,384	1,669	1,833	970	
40세 미만	남	33	26	37	29	54	25	
	여	22	16	20	25	28	7	
	계	55(5.4%)	42(3.3%)	57(4.1%)	54(3.2%)	82(4.5%)	32(3.3%)	
40-49세	남	93	121	132	168	157	71	
	여	17	27	21	20	31	20	
	계	110(10.8%)	148(11.6%)	153(11.1%)	188(11.3%)	188(10.3%)	91(9.4%)	
50-59세	남	232	297	312	392	372	245	
	여	23	40	31	38	48	27	
	계	255(25.0%)	337(26.4%)	343(24.8%)	430(25.8%)	420(22.9%)	272(28.0%)	
60-64세	남	95	138	162	199	230	134	
	여	12	24	34	40	42	11	
	계	107(10.5%)	162(12.7%)	196(14.2%)	239(14.3%)	272(14.8%)	145(14.9%)	
노인	65-69세	남	61	72	111	147	140	94
		여	15	26	30	28	27	15
		계	76(7.4%)	98(7.7%)	141(10.2%)	175(10.5%)	167(9.1%)	109(11.2%)
	70세 이상	남	140	194	221	252	325	158
		여	137	169	174	227	254	103
		계	277(27.1%)	363(28.5%)	395(28.5%)	479(28.7%)	579(31.6%)	261(26.9%)
	합계	남	201	266	332	399	465	252
		여	152	195	204	255	281	118
		소계	353(34.6%)	461(36.2%)	536(38.7%)	654(39.2%)	746(40.7%)	370(38.1%)
미상 등	계	141(13.8%)	125(9.8%)	99(7.2%)	104(6.2%)	125(6.8%)	60(6.2%)	

\* 자료: 보건복지부

○ 중앙정부의 ‘고독사 연령별 비율’을 보면 ‘고독사’는 50대(28%)와 70대 이상(26.9%) 연령층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 집행부(복지본부)의 자료를 보면 50대(35.8%)와 60대(19.8%)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비율을 보이고 있는 등 모든 세대에 걸쳐 다양한 이유<sup>2)</sup>로 고독사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2) 20~30대의 경우 학업 및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결혼 연기·포기, 40~50대는 일 자리 불안 등 경제적 위기, 기러기 가족 등 가족해체와 이혼, 60대 이상은 고령화와 더불어 배우자 사별과 자녀와의 관계 단절로 인하여 1인 취약가구의 비중이 심화되고 있음.

<표> 고독사 연령별 비율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상	연령 불상
비율	3.1%	9.9%	21%	35.8%	19.8%	7.4%	1.2%	0.6%	1.2 %

※ 자료: 서울시

○ 금번 조례안은 사회적 단절 위기 상태에 놓인 1인 가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독사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적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사료됨

※ 중앙정부의 고독사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층 고독사 사고발생 비율이 2012년 27.1%에서 2016년 31.6%로 증가하고 있음. 강남구의 경우에도 최근 고독사로 추정하는 사고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표> 강남구 고독사 의심 현황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고독사 의심 건수	6건	4건	7건	1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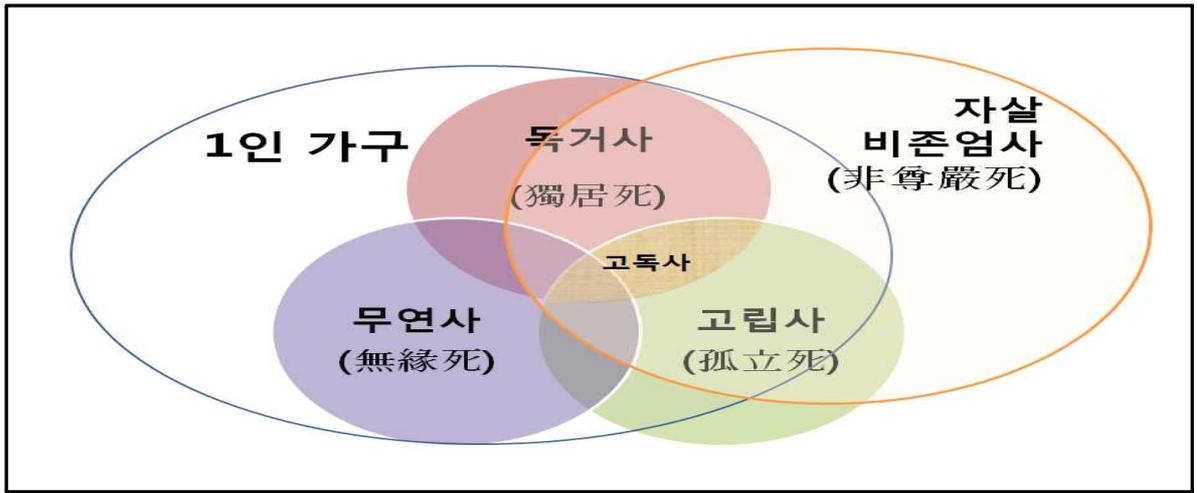
## 2. 조례안의 용어

○ 2020년 3월 31일자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제정된 바, 법에서 명시한 용어정의<sup>3)</sup>를 준용하여 ‘고독사’를 명시하였으며, 그 외에 무연고 사망자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음

※ 참고로, 고독사 명칭과 관련하여 유사한 개념으로 독거사(獨居死), 고립사(孤立死) 등이 있으나, 언론계에서는 ‘고독사’ 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

3)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그림> 고독사와 유사개념 관계



※ 출처 :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 복지재단, ' 16.12)

※ 고독사는 1인 가구의 독거사(獨居死),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립사(孤立死), 사체를 인수한 사람이 없는 죽음에 해당하는 무연사(無緣死), 존엄사와 반대되는 비존엄사(非尊嚴死)와 구분된다고 하겠음.

### 3. 주요 내용 검토

#### 가. 제 명

- 조례안은 현행 제명에서 1인가구를 삭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고독사 라는 죽음형태를 고려할 때 1인 가구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 1인 가구라는 삶의 형태를 개인이 선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인 가구 유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 바, 현행 조례의 제명은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선입관을 가져올 수 있고, ‘1인 가구는 사회안전망 제공이 필요한 계층’ 으로 간주하는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례 제명 개정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나. 구청장의 책무와 예방계획 수립의무(안 제3조 및 제6조)

- 조례안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그 위험에 놓인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별 정책을 시행·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조항들은 고독사를 예방하여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이 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책무를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구청장이 그 책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매년 고독사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예방계획의 수립 (안 제6조)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

- 구청장으로 하여금 고독사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집행기관인 복지본부가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에 복지서비스가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 함으로써 고독사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실태조사(안 제7조)**

- 제정안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통계자료 등으로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실태조사  
(안 제7조)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관련 통계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한 기본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조례 목적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 보여짐
- 실무적으로는 경찰 현장임지일지에 무연고 사망자 항목을 추가하여 시신부패여부, 부패상태, 동거 여부를 현장에서 과학수사팀 형사가 체크하면, 고독사에 대한 안정적인 통계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우리나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찰조직의 지원이 없는 한, 고독사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 마련이 어려울 수 있음
-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일체 점검시 협조, 소방서의 지원,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병원의 환자정보 공개 등이 실태조사에 필요한 바, 이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음

라. 지원대상 및 예방사업(안 제8조 및 제9조)

- 제정안은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를 위한 예방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지원대상  
(안 제6조)  
및  
예방사업  
(안 제7조)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예방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집행부는 현행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이에 대한 지속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담보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원대상 조문(안 제8조제2호)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50세 이상의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고독사 통계 연령별 비율이 50대가 가장 많다는 점(35.8%)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4. 종합의견

- 고독사 발생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자녀 관계 문제, 실업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고시원이나 원룸과 같은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이는 바, 현행 조례와 같이 1인 가구라는 특정 형태의 가구형태와 연계된 고독사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 가구의 고독사 실태를 파악하여 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복지(사회적 관계 형성사업, 사회복지를 위한 공공서비스 연계 등)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전부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고독사 예방이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집행되어, 그 방식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행복추구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해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
- 그러나 고독사를 사회문제로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고독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을 부정함이 아니라, 생명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므로, 집행부가 시민사회와 함께 개인의 선택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참고자료

### ① 고독사 예방 사업 목록

#### ○ ICT 기술 활용 스마트 돌봄 서비스 현황

연 번	사 업 명	내 용	추진부서	비 고
1	TV안부확인서비스	‘딜라이브-강남구’ 민관 협력 사업으로 TV시청 여부확인으로 이상여부 판단	복지정책과	
2	스마트플러그	IOT플러그를 통한 전기량, 조도량 모니터링		
3	서울살피미앱	대상자 핸드폰 사용 여부 확인		
4	ARS음성 안부확인	KT Biz Say 자동음성전화 발송 후 응답 여부 모니터링		
5	AI안부확인서비스	SKT AI care call 인공지능 전화로 대상자의 안부 체크, 위험상태 사전 파악		
6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IOT센서를 통한 대상자 활동성 감지 등	어르신복지과	
7	ICT돌봄 서비스 (AI스피커)	음성인식 AI스피커를 통해 말벗 및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8	장애인응급안전안심 서비스	IOT생활안심센서를 통해 활동성 감지, 화재, 가스감지, 응급호출기로 위급상황 알림	장애인복지과	구 응급알림e

#### ○ 대면 안부확인 서비스 현황

연 번	사 업 명	내 용	추진부서	비 고
1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사)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 강남구’ 협력사업으로 정기적 우유배달을 통해 독거어르신의 안부확인	복지정책과	
2	건강음료 및 밀반찬 지원사업	동별 자체 자원을 확보하여 건강음료, 밀반찬 등을 정기적으로 배송하여 안부확인		
3	우리동네돌봄단	우리동네돌봄단이 독거어르신 등 사회적고립 1인가구 정기 안부확인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돌봄필요 어르신의 안전 및 일상생활지원	어르신복지과	
5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건강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등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관리 실시	건강관리과	

②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연령대 및 성별 현황('21~'22년)

(단위 : 명)

구 분		2021년				2022년			
		계	남	여	불상	계	남	여	불상
합 계		858	721	133	4	1,103	891	209	3
65세 이상	소 계	444	346	98	-	649	487	162	-
	70~	342	250 (29.1%)	92 (10.7%)	-	464	322 (29.2%)	142 (12.9%)	-
	65~69	102	96 (11.2%)	6 (0.7%)	-	185	165 (15.0%)	20 (1.8%)	-
65세 미만	소 계	407	374	33	-	441	397	44	-
	60~64	130	122 (14.2%)	8 (0.9%)	-	167	153 (13.9%)	14 (1.4%)	-
	50~59	207	192 (22.4%)	15 (1.7%)	-	205	185 (16.8%)	20 (1.8%)	-
	40~49	57	52 (6.1%)	5 (0.6%)	-	52	44 (4.0%)	8 (0.7%)	-
	~39	13	8 (0.9%)	5 (0.6%)	-	17	15 (1.4%)	2 (0.2%)	-
미상 및 불상		7	1 (0.1%)	2 (0.2%)	4 (0.4%)	13	7 (0.6%)	3 (0.3%)	3 (0.3%)

③ 서울시 고독사 사망자 연령대별 현황('21~'22년)

○ 집계방법 : 서울시 무연고 자택 사망자 중 고독사 여부 파악 및 각 자치구 고독사 동향보고 건수

연 도	연령대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합 계	158	-	4	18	52	38
	비율	-	2.5%	11.4%	32.9%	24.1%	21.5%	7.6%
2021	76	-	2	10	23	20	15	6
		-	2.6%	13.2%	30.3%	26.3%	19.7%	7.9%
2022	82	-	2	8	29	18	19	6
		-	2.4%	9.8%	35.4%	22.0%	23.2%	7.3%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3
----------	-----

제출연월일 : 2023. 4. 6.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복지정책과

##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중복된 내용 삭제하고,

나. 조례의 주요 대상을 조정·확대하여 사회적 고립·고독사 문제를 범사회적으로 고찰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공고히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나. 고독사 예방 지원 대상을 강남구 주민으로 확대(안 제1, 2, 5, 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23년 본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3. 3. ~ 2023. 3. 23.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

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예방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고독사 예방 사업 공공운영비(9,188천원)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 사업

### 4. 작성자

- 복지정책과 행정8급 박소은(02-3423-5777)